



#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가능 확인

Q 산업단지 내 동일한 회사의 A, B공장이 있습니다. 주소지가 달라서 각각의 사업장폐기물(일반 및 지정)신고를 따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5항 및 시행규칙 21조 7항에 의해 A, B 두 공장의 폐기물신고필증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통합관리가 가능할 경우, 통합절차와 시행규칙 18조 1항 5호 및 18조2의 2항에 의하여 공동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A 같은 산업단지,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 관련

Q 같은 지역의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법인(A,B)으로써, A사업장과 B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사업장은 유독물 제조업 및 사용업 등록이 되어있고, B사업장은 A사업장의 제조품목 중 동일 품목의 사용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 A사업장에서 제조된 유독물을 B사업장의 유독물저장시설(이격거리 ; 약 300m)을 이용하여 A사업장이 판매하고자 할 경우, A사업장의 "유독물제조업영업등록"으로 가능한지요?

A 2. 만약, "질의 1"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의 저장 시설을 활용하여 판매영업을 하고자 할 때, 추가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 먼저,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신다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A사업장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제조한 유독물을 판매한다면, 유독물영업 등록 특례조항에 의해 별도의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조한 유독물이 아닌, 새로운 유독물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업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신고 대상여부

Q 사업자번호가 다른 각 지역 자사 공장(예:창원공장,광주공장,기타지역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합 관리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허가증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A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산정량 관련**

Q 저보일러 연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1. 주 보일러 7톤, 예비용 보일러 5톤이 있을 경우, 주(7톤) 보일러의 고장을 대비하여 설치된 5톤 보일러에 대해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설명-보일러의 용도 : 생산공정에 스팀을 공급하기위한 시설이며 동일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지의 배출허용기준, (제15조관련)] 나.입자형태의 물질란의 비고 2항"일반보일러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예비 보일러는 제외하고 종산정(시행규칙 별표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예비용 포함)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합하여 산정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용을 포함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종 산정의 경우에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여부에 관한 질의**

Q 산업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및 공업용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관로의 길이는 약 15km이고, 굴착폭은 약 1m정도로 총 편입면적은 약 15,000㎡로 산정됩니다. 관로의 매설은 군도, 농어촌 도로 등이며, 대부분의 관로 매설지역이 농림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도로를 굴착한 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별표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전이 필요

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중 가. (1)과 (2)에 따라 사업계획면적대상사업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면적과 이와 관련된 공사에 부대되는 가설도로, 자재 및 토사적치장 등이 모두 포함됨. 따라서 공사 후 원상복구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의한 '보전이 필요한(용도)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면적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며, 이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는 각각의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구간을 일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폐유처리**

Q 소량의 폐유(기름성분 5%이상 함유)처리에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콤푸레샤 작동오일을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폐유는 약 20ℓ 정도로 1년에 40ℓ 정도됩니다. 소량의 폐유도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리업체에 증빙서류만 받고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폐유가 월평균 50킬로 미만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